

1. 개정이유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어선안전관리 및 양식업 관련 규정이 분리·통합되어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기존 행정처분 관련 인용조문 변경 및 신설 규정 반영 등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내 근거 기준 마련

- 동 규칙은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는 규정임을 명시(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 3항)

나. 규칙 내 행정처분 요구기준과 절차 관련 규정 추가

- 「어선안전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근거 규정 추가(안 제4조, 제6조제1, 2항, 제7조제7항, 별표 I.1 · 2 · 4 · 6)

다. 현행 「선박안전조업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인용 근거 변경

- 기존 선박안전조업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 기준을 일괄 삭제하고,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라목 신설)

라.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에 따른 기상특보 시 출항제한 및 준수 사항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2.라목제2호)

마. 「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면허 관련 인용 규정 변경

- 면허어업에서 양식업면허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1.라목 신설)

바. 「수산업법」에서 분리된 양식업의 허가 관련 인용 규정 변경

- 허가어업에서 양식업허가로 분리된 위반행위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안 별표Ⅱ.2.마목 신설)

사. 양식업의 면허·허가 관련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변경

- 기존 양식업 면허·허가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기준
변경(안 별표Ⅱ.1.라목제16·20호, 별표Ⅱ.2.마목제5·6·9·12·13·16~20)

아. 양식 수산물 소지·유통·가공·보관 위반 관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양식산업발전법」 제57조에 따라 불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에 대한
판매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안 별표Ⅱ.1.라목제2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12. ~ 7.2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장관리법」”을 “「어장관리법」, 「어선안전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를 “제34조제1항제7호·제8
호·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8호·제9호, 제27조, 제52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허가의 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이하 “양식업
등행정처분”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2조”를 “법 제72조 또는 「양식
산업발전법」 제71조”로, “어업자등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을 “어업
자등(양식업자를 포함한다)의 어업·양식업의 면허증·허가증”으로 하
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의 면허·허가”를 “어업·양식업의 면허·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한다.

4. 「어선안전조업법」

5. 「양식산업발전법」

제4조 중 “어업등행정처분”을 “어업등행정처분(양식업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을 “어업·양식업의 면허증·허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업 또는”을 “어업·양식업 또는”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전단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어업자”를 “어업자·양식업자”로 한다.

별표 I. 일반기준 제1호 중 “어업등행정처분”을 “어업등행정처분(양식업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일반기준 제6호나목 중 “어업”을 “어업·양식업”으로 하고, 후단 중 “90일 이상의 어업정지”를 “90일 이상의 어업정지, 양식업 경고”로 한다.

별표 II. 개별기준 제1호가목제1호 중 “어구나 양식시설을”을 “어구를”로 하고, 같은 개별기준 제2호는 “어장의 수심,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 사이의 거리 등의 기준을 위한 경우”로 한다.

별표 II. 개별기준 제1호가목제5호, 제7호, 제15호는 각각 삭제하고, 같은 개별기준 제26호 중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을 “포획 또는 채취한”으로 한다.

별표 II. 개별기준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양식산업발전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양식업면허를 받은 양식장구역 밖에 어구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0조	경고	취소	—
2. 양식장의 수심,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0조 제3항	경고	경고	취소
3. 양식장의 부대시설의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제10조 제3항	경고	경고	취소
4. 패류양식업 중 키조개양식장에서의 잠수기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0조 제3항	경고	경고	취소
5. 양식업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경고	경고	취소
6. 양식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경고	경고	취소
7.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양식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경고	경고	취소
8.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양식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22조	경고	취소	—
9.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23조	경고	취소	—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27조 제1호	취소	—	—
11.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권을 이전·분할한 경우	제30조	경고	취소	—
12.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권을 변경한 경우	제30조	경고	경고	취소
13.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내수면어업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업권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1조	경고	취소	—
14. 양식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제32조	경고	취소	—
15. 양식업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3조	경고	취소	—

16. 양식장의 기점 및 양식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을 위반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9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17. 양식장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 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9조 제2항	경고	경고	취소
18. 양식장관리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양 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40조	경고	경고	취소
19. 어촌계·내수면어업계 등이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40조	경고	경고	취소
20.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 서 사용하는 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 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 양식업면허 － 관리선	제41조	경고 정지 30일	경고 취소	취소
21. 양식어업의 양식업권자가 월동장 또는 월하 장의 시설 및 그 관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경고	경고	취소
22.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 한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54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23. 양식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양식 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6조	경고	경고	취소
24. 이 법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 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57조	경고	경고	취소
25.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1조	경고	경고	취소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2호부터 제23호까지 삭제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제32호부터 제33호까지와 제39호 중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 ·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한 경우	제8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10일	정지 15일
2.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의 이탈 금 지를 위반한 경우 가. 피랍(被拉)되거나 나포(拿捕)된 경우 나. 그 밖의 경우	제11조	취소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취소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4.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어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 어등록을 한 경우	제12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5.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10일	정지 15일
6.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 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10일	정지 15일
7. 선단을 편성하여 조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단에서 이탈한 경우	제15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8.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위반 한 경우	제16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10일	정지 15일
9.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에 불응한 경우	제17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0. 정선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선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3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10일	정지 15일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산업발전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허가양식업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양식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 제51조 제52조	경고	취소	—
2.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22조 제51조 제52조	경고	취소	—
3. 양식업의 시작기한을 위반한 경우	제21조 제51조 제52조	경고	경고	취소
4.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해당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제23조 제51조 제52조	경고	취소	—
5.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26조 제51조 제52조	경고	경고	취소
6. 양식장의 표지설치명령을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경우	제39조	경고	경고	취소
7. 허가를 받은 해당 양식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제43조	경고	경고	취소
8. 허가를 받은 양식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경고	경고	취소
9. 양식업 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제1항	경고	경고	취소
10. 양식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2조)	제48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11.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양식업의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제48조 제2항	경고	취소	—

12.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13. 양식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업허가를 받은 경우	제51조제1호	취소	—	—
15. 이 법에 따른 양식방법 또는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한 경우	제54조 제1항	취소	—	—
16.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의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3조)	제54조제2항 제1호	경고	경고	취소
17.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54조제2항 제4호	경고	경고	취소
18.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6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19. 양식업자·양식업종사자가 행정관청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58조 제2항	경고	경고	취소
20.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1조	경고	경고	취소
21. 양식어업의 양식업권자가 월동장 또는 월하장의 시설 및 그 관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42조	경고	경고	취소
22. 위생관리를 위한 양식수산물 및 그 처리에 관한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제54조 제1항	경고	경고	취소
23. 양식업시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6조	경고	경고	취소
24. 이 법을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제57조	경고	경고	취소
25. 어업감독 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1조	경고	경고	취소

별지 제3호와 제4호 서식의 본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로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의 본문 중 “연안어업”을 “양식업 면허·허가”로 하고, “근해어업”을 “연근해어업”으로 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의 본문 중 “수산자원보호령”과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각각 “양식산업발전법”과 “어선안전조업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어장관리법」, 「어선안전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 ----- ----- ----- ----- ----- -----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 ----- ----- -----.
1.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8호·제9호, 제35조, 제49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취소와 어업자, 어업종사자, 어획물운반업자 또는		1.	-----	---- 제34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 ----- ----- ----- -----

어획물운반업종사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하 “어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

2. (생략)

<신설>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은 어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수산물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어업자등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또는 해기사면허증(이하 “어업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해당 어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제8호·제9호, 제27조, 제52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허가의 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이하 “양식업등행정처분”이라 한다)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법 제7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

----- 어업자등(양식업자를 포함한다)의 어업·양식업의 면허증·허가증-----

-----.

1. ~ 3. (생략)

<신설>

<신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어업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① 어업등 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

1. ~ 3. (현행과 같음)

4. 「어선안전조업법」

5. 「양식산업발전법」

② (현행과 같음)

③ -----

---어업·양식업의 면허·허-

-----.

1. ~ 3. (현행과 같음)

4. 어업·양식업-----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어업등 행정처분(양식업의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6조(행정처분의 절차) ① -----

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신고증명서를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고처분을 제외한 어업등 행정처분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하되,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항구를 지정하여 해당 어선 또는 운반선(이하 “어선등”이라 한다)을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 ④ (생략)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

-----.

-----어업·양식업-----

-----어업·양식업의 면허증·허가증-----

-----.

② -----

-----어업

·양식업 또는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u>어업</u>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⑦ 관할 행정청 또는 제4항·제5항에 따라 계류 조치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정지처분기간이 끝나면 계류 조치를 해제하고 어업면허증등을 <u>어업자</u>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u>어업·양식업</u>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u>어업자·양식업자</u> ----- -----.
---	--